투자 위험 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0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Tel. 02-789-0300, 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 Tel.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11.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2026.10.18)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펀드코드: 61086]

투자위험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납입금액의 1.0% 이내	2.01	0.90	1.70	2.143	317	545	785	1,301	2,8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없음	2.61	1.50	1.84	2.610	268	549	843	1,478	3,365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46	0.35	1.22	1.592	212	383	562	947	2,0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없음	2.11	1.00	1.37	2.243	230	471	725	1,271	2,89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은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8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025.10.19~ 2026.10.18)	최근 2년 (2024.10.19~ 2026.10.18)	최근 3년 (2023.10.19~ 2026.10.18)	최근 5년 (2021.10.19~ 2026.10.18)	설정일 이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2006.10.16	20.69	23.60	20.82	16.36	3.39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4.05.23	21.33	24.25	21.46	16.98	7.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06.10.18	20.57	23.48	20.71	16.24	3.17
비교지수	2006.10.16	21.85	24.65	22.73	14.35	4.16
수익률 변동성	2006.10.16	19.15	17.69	16.67	17.41	18.94

주1) 비교지수: [(MSCI World Energy × 30%) + (MSCI World Materials × 30%) + (FTSE Gold Mines × 30%)] + [KAP Call ×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해외주식형, 단위:%)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용현	1980	팀장	22개	6,212	-	-	15.85	23.76	5년 1개월
임연수	1991	선임	8개	840	-0.81	-			2년 6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주식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미달러화(USD) 등의 통화 대비 이종통화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위험관리: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외화자산 순자산평가액 70±30%의 목표 환헤지 수준)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면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과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제한된 수의 종목에 투자하게 되고, 또한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는 투자대상 국가들의 대표적인 지수들의 변동과는 별개로 투자대상인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과 관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매입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①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④ Class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table>
<tr><td></td><td colspan="3">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추가설정과 관계없이 최초매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번호 : 02-789-0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iwoomam.com</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년 11월 05일</td><td>존속기간</td><td>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8개월</td></tr>
<tr><td>수수료후취</td><td>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8개월</td></tr>
<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S)</td><td>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6">기타</td><td>보수체감(CDSC)</td><td>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td></tr>
<tr><td>무권유저비용(G)</td><td>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퇴직연금(P2)</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기관 (F)</td><td>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고액</td><td>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랩(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td></tr>
</table>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0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0
3. 모집예정금액 10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0
5. 인수에 관한 사항 10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1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3
4. 집합투자업자 1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4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6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6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9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1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25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9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0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6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41
1. 재무정보 4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44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47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3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53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54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4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5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56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56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7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7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9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60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62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63
[붙임] 용어풀이 64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61086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610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610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960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960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960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960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744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61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615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 (C-H)	737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A3981
수수료선취-온라인 (A-e)	AQ75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Q75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BP7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CV9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CV96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D33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D387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2)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

3)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4)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5)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6)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3)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를 통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61086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610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610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960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960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960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960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744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61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615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 (C-H)	737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A3981
수수료선취-온라인 (A-e)	AQ75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Q75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BP7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CV9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CV96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D33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D387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6.10.16	최초 설정
2006.12.01	Late Trading 관련, C4 Class추가
2007.05.14	C4 Class 보수 120bp로 조정
2007.07.30	간접투자기구 매입 클래스의 추가 C-W Class 신설
2007.09.11	장기주택마련저축 클래스 신설 및 표준약관의 반영 투자대상 정의의 명확화
2008.01.2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관련 조항의 변경 등
2009.05.04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전면개정 (우리크레디트스위스 글로벌 천연자원 주식투자신탁 제1호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 2006년 6월 10일부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경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 → Mellon Capital Management Corporation)
2009.05.28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의 건 등
2010.03.16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17시 이전 매입청구시: D+1→D+2, 17시 경과 후 매입청구시: D+2→D+3), 이익분배 명확화, 세제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투자신탁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갱신의 건을 포함한 최근 결산기 정보 반영의 건 등
2010.05.03	Class C1 판매보수율 인하의 건(연 1.750% → 연 1.5%), Class C2 판매보수율 인하의 건(동일한 비율로 매년 인하하여 2013.05.03 이후 연 1.1%로 인하), Class C-H 판매보수율 인하의 건(동일한 비율로 매년 인하하여 2013.05.03이후 연 1.1%로 인하), 미설정된 Class C3, C4 삭제의 건 및 이에 따른 Class C2 가입자격 변경 등
2011.01.10	- Class 명칭변경(Class C2 → Class C-I) - Class C1의 CDSC(체감식) 판매보수율 인하 적용을 위한 CDSC 클래스 추가 및 기존 Class C1 수익자의 CDSC 일괄적용의 건 ▪ 추가 CDSC 클래스: Class C2(판매보수율: 연 1.4%), Class C3(판매보수율: 연 1.3%), Class C4(판매보수율: 연 1.2%), Class C5(판매보수율: 연 1.1%) - Class C-e 판매보수율 인하의 건(동일한 비율로 매년 인하하여 2014년 1월 10일 이후 연

	1.0%로 인하) - 2013년 5월 3일이후부터 적용하는 Class C-I의 판매회사 보수율을 연 1.1%에서 연 1.08%로 인하 - 2013년 5월 3일이후부터 적용하는 Class C-H의 판매회사 보수율을 연 1.1%에서 연 1.09%로 인하 - 세제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10.1.1~'10.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과 상계 가능 → '10.1.1~'11.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과 상계) - 자본시장법 시행령(임의해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투자신탁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갱신의 건을 포함한 최근 결산기 정보 반영의 건 등
2011.06.07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경 (Mellon Capital Management Corporation → Amundi) - 비교지수 변경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x 90%] + [Call x 10%] → [(MSCI World Energy x 30%) + (MSCI World Materials x 30%) + (FTSE Gold Mines x 30%)] + [Call x 10%]) - Class C-F 신설 및 Class C-W 가입자격 변경 - 투자신탁 결산(반기)으로 인한 신고서(투자설명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등
2011.07.26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영준 → 강석훈, 2011.07.16 변경)
2011.12.06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신고서(투자설명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2012.11.30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공시 및 보고서 등)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세제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해외펀드 손익상계 2012년말까지 연장) -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변경
2013.01.28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강석훈→옥혜은),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옥혜은→김태현) (2013.01.01. 변경) - 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해외펀드 손익상계 2013년말까지 연장)
2013.04.17	- 채권평가회사 추가 (에프엔자산평가)
2013.12.0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HSBC펀드서비스 → 우리펀드서비스)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 반영
2014.03.18	Class A-e, Class S 신설
2014.08.25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운용전문인력: 옥혜은→전재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4.08.19.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14.6.1) - 세제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해외펀드 손익상계 2014년말까지 연장) - 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
2014.12.18	- 집합투자업자 명칭 및 이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변경(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14.10.01) 등
2015.10.01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경 (Amundi → GAM Investment Management (Switzerland) AG) -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 등
2015.12.18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등
2016.02.04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6.1.21) 반영
2016.02.26	- 세법 개정사항 반영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등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12.22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2016.04.01 시행)
2017.04.29	- Class AG 수익증권 신설
2017.12.28	- 외화자산의 운용을 위탁운용에서 직접운용으로 변경(GAM Investment

	Management(Switzerland) AG → 키움투자자산 직접운용) - 환매수수료 삭제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등
2018.02.09	- 운용전문인력 변경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8.11.30	- 운용전문인력 변경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9.09.05	- Class C-P2(퇴직연금), Class C-P2e(퇴직연금) 신설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8.1) 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19.9.16.)에 따른 내용 반영
2019.10.29	-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 → 3등급)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전자증권법 시행('19.9.16.)에 따른 내용 추가 반영
2020.04.03	- Class S-P, Class S-P2(퇴직연금) 신설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2020.10.28	- 위험등급 변경 (3등급 -> 2등급)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21.11.25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2.11.16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3.11.23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한철민→김종협)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등록(김지수)
2023.12.14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수익률 변동성 24.48% → 17.89% 등)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증권대차거래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 등)
2024.10.30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표준편차 17.89% → 97.5% VaR 33.20%)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위험등급 산정기준 업데이트 등)
2025.02.26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종협→이규)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25.10.28	-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 높은 위험 →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실제 수익률 변동성 33.20% → 28.74%)
2026.10.20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규→김용현)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등록(임연수)
2026.11.05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실제 수익률 변동성 28.74% → 29.85%)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12층 (대표전화: 02-789-03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의 업무위탁

※ 이 투자신탁의 해외자산 운용에 대한 업무를 GAM Investment Management (Switzerland) AG에 위탁하였으나, **2017년 12월 28일부터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직접 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6.10.18 현재)

1)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해외주식형, 단위:%)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용현	1980	팀장	22개	6,212	-	-	15.85	23.76	*운용경력: 5년 1개월 (2008.12. ~ 2011.02.) 한국리스크관리 컨설팅사업부 컨설팅1팀 (2011.03. ~ 2015.1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 (2016.01. ~ 2023.11.) 삼성생명 특별계정사업부 변액주식운용부 (2023.11.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팀
임연수	1991	선임	8개	840	-0.81	-			*운용경력: 2년 6개월 (2017.12 ~ 2020.03) 신한투자증권 / IPO 팀 (2022.09 ~ 2024.04) 브이아이자산운용 / 멀티전략운용팀 (2024.05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 글로벌주식운용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주4)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한철민	2018.11.30 ~ 2023.11.22
	김종협	2023.11.23 ~ 2025.02.25

	이규	2025.02.26 ~ 2026.10.19
	김용현	2026.10.20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지수	2023.11.23 ~ 2025.02.25
	임연수	2026.10.20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 (C-H)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2)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8개월
	수수료후취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8개월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

		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본 신탁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투자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2011.06.07.부터) [(MSCI World Energy × 30%) + (MSCI World Materials × 30%) + (FTSE Gold Mines × 30%)] + [Call × 10%]**

주1) 이전 비교지수 : 설정일~2009.06.09. [CS 천연자원 지수* × 90%] + [Call × 10%]

*CS 천연자원지수: [MSCI Mining 지수 × 50%] + [MSCI Energy 지수 × 25%] + [MSCI Paper & Forest 지수 × 15%] + [MSCI Chemical 지수 × 10%]

2009.06.10.~2011.06.06.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USD) × 90%] + [Call × 10%]

주2) MSCI World Energy / Materials 지수: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지수 중 전세계 에너지 업종 / 소재 관련 지수 (지수현황은 www.bloomberg.com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주3) FTSE Gold Mines 지수 :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ternational에서 산출, 발표하는 지수로 금광 관련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전세계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지수현황은 www.bloomberg.com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특정산업분야(Sector)들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고유한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이 투자신탁과 비교지수 간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및 가격변동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 합니다.

주6) 이종통화 투자 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는 외화 표시 자산의 경우 이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비교지수와 펀드 실제 성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주식	60% 이상 (글로벌천연자원 주식에 60% 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합니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다만,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글로벌천연자원 주식"이라 합니다)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40% 이하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및 양도성 예금증서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합니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 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등	5% 이하 (ETF 30%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다만,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권의 대여[1)]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차입[2)]	자산총액의 20% 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1. 및 2. 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주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여 수익률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9.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비율 제한의 예외	① 다음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항제 6 호 내지 제 10 호, 제 19 조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3 호, 제 5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항제 7 호 및 제 19 조제 1 항제 2 호, 제 5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대한 전망 및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여러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투자신탁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신탁자산의 40% 이하를 한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BBB-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채권, 예금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주로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이 기본운용방침이지만, 운용전략이나 환경의 변화에 각 자산 별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용방침은 국내외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투자대상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전성 및 투자대상 시장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을 선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④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⑤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를 (2011.06.07.부터) '[(MSCI World Energy × 30%) + (MSCI World Materials × 30%) + (FTSE Gold Mines × 30%)] + [KAP Call × 10%]'로 정했습니다.

주1) 이전 비교지수 : 설정일~2009.06.09. [CS 천연자원 지수* × 90%] + [KAP Call × 10%]

*CS 천연자원지수: [MSCI Mining 지수 × 50%] + [MSCI Energy 지수 × 25%]
+[MSCI Paper & Forest 지수 × 15%] + [MSCI Chemical 지수 × 10%]

2009.06.10.~2011.06.06.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USD) × 90%] + [KAP Call × 10%]

주2) MSCI World Energy / Materials 지수: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지수 중 전세계 에너지 업종 / 소재 관련 지수 (지수현황은 www.bloomberg.com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주3) FTSE Gold Mines 지수 :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ternational에서 산출, 발표하는 지수로 금광 관련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전세계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지수현황은 www.bloomberg.com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특정산업분야(Sector)들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고유한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이 투자신탁과 비교지수 간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및 가격변동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 합니다.

주6) 이종통화 투자 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는 외화 표시 자산의 경우 이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비교지수와 펀드 실제 성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주요 투자대상국 현황

미 국	
인구	3억4,181만명 (2024년 기준)
화폐단위	미 달러 (USD)
GDP	28조 4410억 달러 (2024년 기준)
1인당 GDP	84,590 달러 (2024년 기준)
실질 경제성장률	2.8% (2024년 기준)
산업구조	각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금융·부동산(22.3%), 전문서비스(12.8%), 제조업(10.8%), 도소매(11.5%), 교육/의료(8.6%), 정보통신(5.5%), 문화서비스(3.2%), 건설(4.3%), 교통(2.8%), 농어업(0.8%), 광업(0.9%), 전력(1.6%), 기타 서비스(2%), 정부 부문(12.6%)
주요 수출품목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 항공우주 등 (World Trade Atlas)
주요 수입품목	석유화학,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광학기기 등 (World Trade Atlas)

캐 나 다	
인구	3,911만 명 (2024년 기준)
화폐단위	캐나다 달러 (CAD, C$)
GDP	23,300억 달러 (2024년 기준)
1인당 GDP	55,890 달러 (2024년 기준)
실질 경제성장률	1.5%(2024년 기준)
산업구조	금융부동산업(8%), 제조업(9%), 광산업(8%), 건설업(7%), 의료복지(7%), 부동산(14%), 에너지(9%), 정보통신기술(5%), 운류운송(4%), 기타(29%)
주요 수출품목	원유, 자동차 및 부품, 금, 천연가스, 항공기, 원목, 의약품, 밀

주요 수입품목	자동차 및 부품, 원유, 의약품, 의료기기, 철강, 플라스틱, 컴퓨터, 휴대전화

주1)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TRA

주2) 상기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을 바탕으로 기재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향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제현황은 향후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①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주식가격의 변동성, 헤지수단 및 헤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달러화(USD) 등의 통화 대비 이종통화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화자산의 움직임이 클 경우 러시아, 동유럽 지역의 구소련 연방국가관련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지는 못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면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주요통화[국제거래상 주요결제수단 중에서 국내 선물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 **순자산평가액 70±30%의 목표 환헤지 수준**을 유지하는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며, 주요통화 이외의 기타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 전략의 실행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스왑, 옵션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동 등으로 상기 목표 환헤지 수준의 유지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목표 환헤지 수준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그 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③ 일부 이머징 국가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투자신탁의 자금이 납입되더라도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일부 이머징 국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투자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와는 관계없이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는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2) 수익구조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위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과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제한된 수의 종목에 투자하게 되고, 또한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는 투자대상 국가들의 대표적인 지수들의 변동과는 별개로 투자대상인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과 관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거래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도 있으며,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위탁해지위험	동 펀드는 외화자산과 관련된 운용업무를 해외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 투자신탁의 100억 미만의 소규모설정 또는 집합투자업자·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제반 사정등에 의한 경우, 선임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거나 해임될 경우 별도의 업무위탁 없이 운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와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기타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기준가격 오류 등)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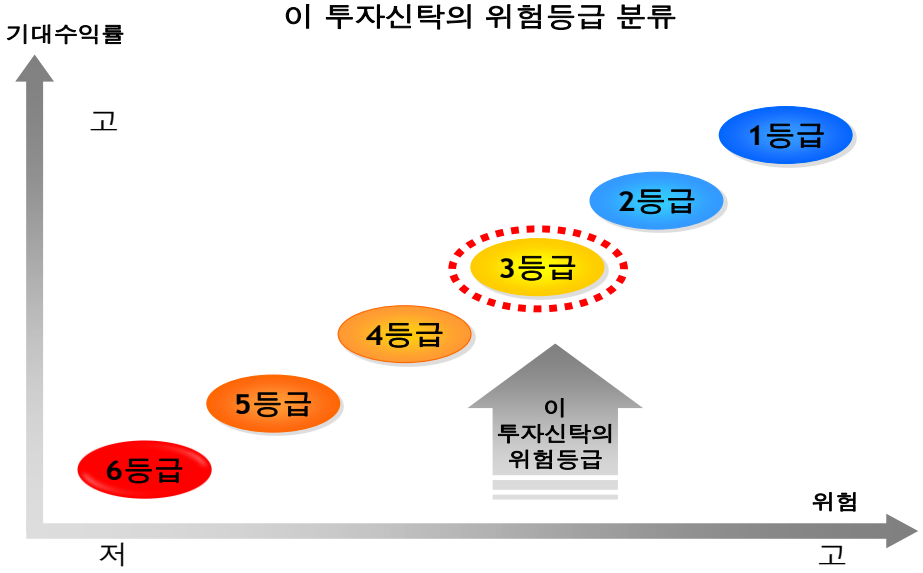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 억원 미달하고 3 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29.85%로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여 천연자원 관련 가격 및 시황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최직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시장위험 등급 기준(97.5% VaR 모형* 사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분류기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 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 매입

가.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ss 구분	판매 기준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납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음 (C1클래스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음 (C2클래스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음 (C3클래스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음

(C5)	(C4클래스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 (C-H)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에 의한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 (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2(퇴직연금))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주1) 2011년 1월 10일 이전 가입한 Class C2 수익증권의 변경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의 "2)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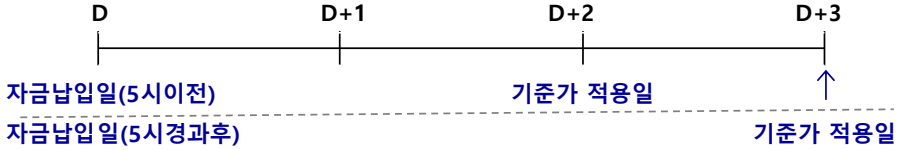
주2) Class C2 수익증권, Class C3 수익증권, Class C4 수익증권, Class C5 수익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의 "2)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전환

가. 수익증권의 전환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한다.
 ①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④ Class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추가설정과 관계없이 최초매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나. 수익증권 전환시 기준가격 등

수익증권 전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011년 1월 10일 이전, 수익증권에 가입한 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기존 수익자에 대한 변경 Class 수익증권의 적용

2011년 1월 10일 이전 가입한 수익증권	2011년 1월 10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수익증권
Class C2	Class C-I

② 2011년 1월 10일 이전에 Class C1 수익증권에 가입한 수익자는 상기의 **가. 수익증권의 전환방법**에도 불구하고 Class C1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Class C2 수익증권, Class C3 수익증권, Class C4 수익증권, Class C5 수익증권으로 2011년 1월 10일에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③ ②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5 수익증권에 한합니다)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전환일에 관계없이 2011년 1월 10일 이전 매입한 Class C1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3) 환매

중도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

가.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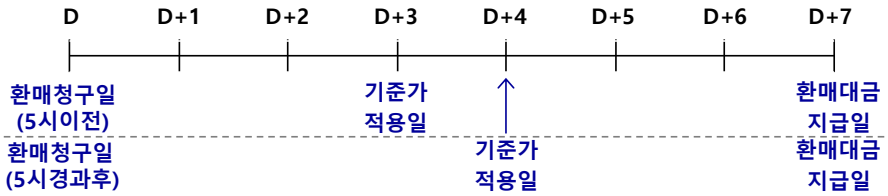
나.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라.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마.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증권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바.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집합투자규약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 환매가격
 -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⑤ 및 ⑥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①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⑨ ⑧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②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⑪ 집합투자업자는 ⑩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⑫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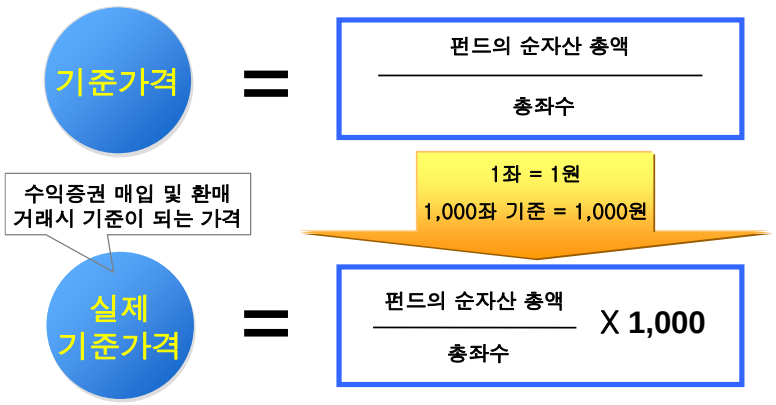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계산·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서류공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클래스별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별로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①-2 외화표시유가증권인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② 비상장 주식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방법을 결정.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 파생결합증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의 평균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제한없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종류 C1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종류 C2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종류 C3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종류 C4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10 억원 이상 매입시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수익자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보유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 (C-H)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대상자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주 5) 참조	-	-	-	-

인-기관 (C-F)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75%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2011년 1월 10일 이전 가입한 Class C2 수익증권의 변경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의 “2)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Class C2 수익증권, Class C3 수익증권, Class C4 수익증권, Class C5 수익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의 “2)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 Class C-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2.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3.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4.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에 의한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1.0000	0.9000	0.0800	0.0300	2.0100	1.7000	0.1334	2.1434	2.1434	0.04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1.0000	1.5000	0.0800	0.0300	2.6100	1.8400	-	2.6100	2.61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1.0000	1.4000	0.0800	0.0300	2.5100	1.8400	-	2.5100	2.51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1.0000	1.3000	0.0800	0.0300	2.4100	1.8400	-	2.4100	2.41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1.0000	1.2000	0.0800	0.0300	2.3100	1.8400	-	2.3100	2.31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1.0000	1.1000	0.0800	0.0300	2.2100	1.8400	0.1333	2.3433	2.3433	0.04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1.0000	1.0800	0.0800	0.0300	2.1900	-	-	2.1900	2.19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1.0000	1.0000	0.0800	0.0300	2.1100	1.3700	0.1334	2.2434	2.2434	0.04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1.0000	0.0000	0.0800	0.0300	1.1100	-	-	1.1100	1.11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 (C-H)	1.0000	1.0900	0.0800	0.0300	2.2000	-	0.1315	2.3315	2.3315	0.04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1.0000	0.0300	0.0800	0.0300	1.1400	-	-	1.1400	1.1400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1.0000	0.3500	0.0800	0.0300	1.4600	1.2200	0.1324	1.5924	1.5924	0.070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1.0000	0.3500	0.0800	0.0300	1.4600	-	0.1315	1.5915	1.5915	0.0453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1.0000	0.6700	0.0800	0.0300	1.7800	-	-	1.7800	1.78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1.0000	0.6800	0.0800	0.0300	1.7900	-	-	1.7900	1.79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1.0000	0.3400	0.0800	0.0300	1.4500	-	0.1315	1.5815	1.5815	0.04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1.0000	0.2800	0.0800	0.0300	1.3900	-	0.1315	1.5215	1.5215	0.04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1.0000	0.2700	0.0800	0.0300	1.3800	-	0.1315	1.5115	1.5115	0.0466
지급시기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	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비용, 채권평가비용, 부동산감정평가비용, 감사비용, 펀드평가비용, 지수사용료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10.16 ~ 2026.10.15]

주2)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10.16 ~ 2026.10.15]

주3)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이자비용, 현금담보이자비용 등 기타 이자비용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 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행분담금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계기간 중 해당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증권거래비용	4,992
금융비용	0
발행분담금	0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모투자신탁의 보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비용을 제외한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7)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8)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차감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

추정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9)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해당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17	545	785	1,301	2,83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317	545	785	1,301	2,8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8	538	810	1,376	3,07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68	538	810	1,376	3,0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7	517	778	1,348	3,04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57	517	778	1,348	3,0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7	496	761	1,331	3,02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47	496	761	1,331	3,0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7	489	754	1,324	3,01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37	489	754	1,324	3,0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0	492	757	1,327	3,02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40	492	757	1,327	3,0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5	460	708	1,241	2,82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25	460	708	1,241	2,8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0	471	725	1,271	2,893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30	471	725	1,271	2,8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4	233	359	629	1,43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4	233	359	629	1,4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 (C-H)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9	490	753	1,321	3,00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39	490	753	1,321	3,0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7	240	368	646	1,47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7	240	368	646	1,470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2	383	562	947	2,093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12	383	562	947	2,09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3	334	514	901	2,05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3	334	514	901	2,0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6	446	645	1,075	2,35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56	446	645	1,075	2,3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3	376	578	1,014	2,30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83	376	578	1,014	2,3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2	332	511	896	2,03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2	332	511	896	2,039
수수료미징구-온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6	320	492	862	1,962

인슈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6	320	492	862	1,96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5	318	488	856	1,94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5	318	488	856	1,949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율 0%(10년 투자 가정),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류 C1, C2, C3, C4, C5의 경우는 전환되는 경우 예상되는 보수 및 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별로(A1, C1/C2/C3/C4/C5)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1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변경 등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12월 22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펀드신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가능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인 Class C-H 가입자에 한함)

장기주택마련저축	- 이 투자신탁의 Class C-H수익증권은 **만18세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합니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합니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 장기주택마련 투자신탁입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가입대상	-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②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합니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합니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비과세 혜택 가입시한	- **2012년 12월 31일까지(단, 소득공제 혜택은 2009.12.31 이전 가입자에 한함)**
가입한도	- **분기 300만원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합계액), 선납 또는 후납 불가**
배당소득 비과세	-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 - **2012.12.31까지 가입자에 해당됨**

	* 단,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 •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 ·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2008.1.1 이후 주택취득자에 한함)
근로소득 공제	- **공제대상:** 2009.12.31.이전 가입한 자로서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8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내용:** 근로소득자인 세대주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액 부여(이 경우 주택자금 대출과 합산하여 산정함)
세액추징	- **이자 소득세 추징:**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액 추징:**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 추징. 다만, 실제 소득공제 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법정해지요건	- **최초 가입 7년 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시 법정해지 처리** **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Class C-P2(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가입자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하며,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0 기 (2025.10.16 ~ 2026.10.1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9기 (2024.10.16 ~ 2025.10.1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8기 (2023.10.16 ~ 2024.10.1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20 기 (2026.10.15)	제19기 (2025.10.15)	제18기 (2024.10.15)
운용자산	9,262,627,905	8,801,951,218	8,257,916,777
증권	8,389,960,648	7,588,671,673	7,636,691,390
파생상품	98,761,004	-98,853,396	-42,305,363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773,906,253	1,312,132,941	640,038,390
기타 운용자산	0	0	23,492,360
기타자산	434,974,611	6,805,109	9,485,978
자산총계	9,697,602,516	8,808,756,327	8,267,402,755
운용부채	-1,058	15,134	2,771
기타부채	65,523,605	21,680,507	24,128,538
부채총계	65,522,547	21,695,641	24,131,309
원본	4,852,159,316	5,544,968,729	6,632,770,088
수익조정금	-650,888,997	-536,581,495	-250,250,397
이익잉여금	5,430,809,650	3,778,673,452	1,860,751,755
자본총계	9,632,079,969	8,787,060,686	8,243,271,446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0 기 (2025.10.16 ~ 2026.10.15)	제19기 (2024.10.16 ~ 2025.10.15)	제18기 (2023.10.16 ~ 2024.10.15)
운용수익	5,465,533,300	5,179,676,645	3,293,487,087
이자수익	11,400,943	6,513,585	10,853,744
배당수익	222,272,941	201,325,312	235,324,268
매매/평가차익(손)	5,231,859,416	4,971,837,748	3,047,309,075
기타수익	4,839,935	7,030,699	34,506,991
운용비용	-155,074	-151,755	-476,835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155,074	-151,755	-476,835

기타비용	-37,496,601	-35,346,510	-38,208,764
당기순이익	5,432,721,560	5,151,209,079	3,289,308,479
매매회전율	30	61	9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 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주식의 매매회전율 산출과 관련하여 주식 매수·매도 금액, 보유주식의 평균가액,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

<주식의 매매회전율>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6,285	1,907.83	27,752	2,810.84	9,221.72	30.48	32.57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합니다.

주5) 이 투자신탁은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하며 상기의 요약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에는 증권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이 다음과 같이 포함·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타수익 :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20기 0백만원, 19기 0백만원, 18기 0백만원 발생)
- 기타비용 :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20기 0백만원, 19기 0백만원, 18기 0백만원 발생)

주6)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4,718.67	4.99	0.11	6,482.58	4.73	0.07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2,940.07	0.00	0.00	1,871.01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7,658.74	4.99	0.07	8,353.59	4.73	0.06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제외하였습니다.

2)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20기(2026.10.15) 금 액		제19기(2025.10.15) 금 액		제18기(2024.10.15)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773,906,253		1,312,132,941		640,038,390
1. 현금및현금성자산	773,902,702		1,312,129,390		640,034,839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3,551		3,551		3,551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8,389,960,648		7,588,671,673		7,636,691,390
1. 지분증권	8,389,960,648		7,588,671,673		7,636,691,39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0		0		0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98,761,004		-98,853,396		-42,305,363
1. 파생상품	98,761,004		-98,853,396		-42,305,363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434,974,611		6,805,109		32,978,338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425,393,352		0		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398,567		407,517		342,336	
4. 미수배당금	5,067,395		2,212,304		2,699,523	
5. 기타미수입금	4,792,702		4,089,195		6,488,712	
6. 기타자산	-677,405		96,093		23,447,767	
7.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9,697,602,516		8,808,756,327		8,267,402,755
부 채						
운 용 부 채		-1,058		15,134		2,771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1,058		15,134		2,771	
기 타 부 채		65,523,605		21,680,507		24,128,538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104,352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63,260,048		20,938,715		23,986,310	
4. 수수료미지급금	159,205		741,792		142,228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65,522,547		21,695,641		24,131,309
자 본						
1. 원 본	4,852,159,316		5,544,968,729		6,632,770,088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650,888,997		-536,581,495		-250,250,397	
3. 이월잉여금	5,430,809,650		3,778,673,452		1,860,751,755	
(발행좌수 당기: 4,852,159,316 좌	이익잉여금	5,430,809,650		3,778,673,452		1,860,751,755
전기: 5,544,968,729 좌	수익조정금	0		0		0
전전기: 6,632,770,088 좌)						
(기준가격 당기: 1,985.11 원						
전기: 1,584.69 원						
전전기: 1,242.81 원)						
자 본 총 계		9,632,079,969		8,787,060,686		8,243,271,44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697,602,516		8,808,756,327		8,267,402,755

3)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20기(2025.10.16 ~ 2026.10.15 금 액		제19기(2024.10.16 ~ 2025.10.15 금 액		제18기(2023.10.16 ~ 2024.10.15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38,513,819		214,869,596		257,192,643
1. 이 자 수 익	11,400,943		6,513,585		10,853,744	
2. 배당금수익	222,272,941		201,325,312		235,324,268	
3. 수수료수익	0		0		0	
4. 기타투자수익	4,839,935		7,030,699		11,014,631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934,969,904		5,567,119,206		3,990,956,383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4,848,076,717		4,602,224,078		2,826,122,90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840,698,504		131,761,200		537,107,100	
6. 외환거래/평가차익	246,194,683		833,133,928		604,234,019	
7. 기타차익	0		0		23,492,36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703,110,488		595,281,458		920,154,948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29,178,839		36,778,434		143,498,835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652,918,740		533,507,886		761,152,063	
6. 외환거래/평가차손	21,012,909		24,995,138		15,504,05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37,651,675		35,498,265		38,685,599
1. 운용수수료	0		0		0	
2. 판매수수료	0		0		0	
3. 수탁수수료	0		0		0	
4. 사무수탁수수료	0		0		0	
5. 지급수수료	4,751,997		4,007,514		2,715,412	
6. 기타비용	32,899,678		31,490,751		35,970,187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5,432,721,560		5,151,209,079		3,289,308,479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1		1		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10.16 ~ 2026.10.15	55.45	87.87	26.50	50.03	33.43	63.47	48.52	96.32	0.00
2024.10.16 ~ 2025.10.15	66.33	82.43	8.35	11.40	19.23	24.95	55.45	87.87	0.00
2023.10.16 ~ 2024.10.15	73.96	76.51	15.16	17.41	22.80	25.90	66.33	82.43	0.00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10.16 ~ 2026.10.15	51.88	57.28	16.09	21.35	19.86	25.69	48.11	65.25	0.00
2024.10.16 ~ 2025.10.15	59.05	52.14	4.60	4.46	11.78	11.00	51.88	57.28	0.00
2023.10.16 ~ 2024.10.15	65.08	48.76	6.56	5.32	12.58	10.40	59.05	52.14	0.00

▶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10.16 ~ 2026.10.15	11.02	11.73	4.66	5.65	7.16	8.80	8.52	11.13	0.00
2024.10.16 ~ 2025.10.15	11.37	9.69	2.33	2.13	2.68	2.32	11.02	11.73	0.00
2023.10.16 ~ 2024.10.15	12.90	9.34	2.35	1.85	3.88	3.05	11.37	9.69	0.00

▶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 (C-H)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10.16 ~ 2026.10.15	0.43	0.45	0.00	0.00	0.05	0.06	0.38	0.49	0.00
2024.10.16 ~ 2025.10.15	0.67	0.57	0.00	0.00	0.25	0.21	0.43	0.45	0.00
2023.10.16 ~ 2024.10.15	0.68	0.49	0.00	0.00	0.01	0.01	0.67	0.57	0.00

▶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10.16 ~ 2026.10.15	7.80	8.14	0.07	0.08	2.02	2.39	5.84	7.47	0.00
2024.10.16 ~ 2025.10.15	10.15	8.49	0.07	0.06	2.42	2.04	7.80	8.14	0.00
2023.10.16 ~ 2024.10.15	13.01	9.25	0.06	0.04	2.92	2.19	10.15	8.49	0.00

▶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수료선취-온라인 (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10.16 ~	2.81	5.54	7.50	17.42	8.10	19.74	2.21	5.38	0.00

2026.10.15									
2024.10.16 ~ 2025.10.15	5.13	8.03	1.85	3.15	4.17	6.65	2.81	5.54	0.00
2023.10.16 ~ 2024.10.15	3.54	4.68	5.87	8.68	4.29	6.19	5.13	8.03	0.00

▶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10.16 ~ 2026.10.15	0.35	0.75	0.30	0.75	0.13	0.35	0.52	1.39	0.00
2024.10.16 ~ 2025.10.15	0.51	0.89	0.07	0.12	0.23	0.44	0.35	0.75	0.00
2023.10.16 ~ 2024.10.15	0.62	0.91	0.26	0.42	0.37	0.57	0.51	0.89	0.00

▶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10.16 ~ 2026.10.15	0.47	0.61	1.05	1.60	0.69	1.04	0.83	1.33	0.00
2024.10.16 ~ 2025.10.15	0.00	0.00	0.61	0.67	0.14	0.16	0.47	0.61	0.00

▶ 키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10.16 ~ 2026.10.15	0.50	0.98	0.72	1.67	0.62	1.46	0.61	1.47	0.00
2024.10.16 ~ 2025.10.15	0.38	0.59	0.30	0.51	0.17	0.28	0.50	0.98	0.00
2023.10.16 ~ 2024.10.15	0.76	0.99	0.38	0.53	0.75	1.02	0.38	0.59	0.00

▶ 움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10.16 ~ 2026.10.15	0.91	1.75	0.66	1.51	0.75	1.71	0.83	1.95	0.00
2024.10.16 ~ 2025.10.15	0.93	1.41	0.19	0.29	0.20	0.32	0.91	1.75	0.00
2023.10.16 ~ 2024.10.15	1.19	1.52	0.41	0.58	0.67	0.92	0.93	1.41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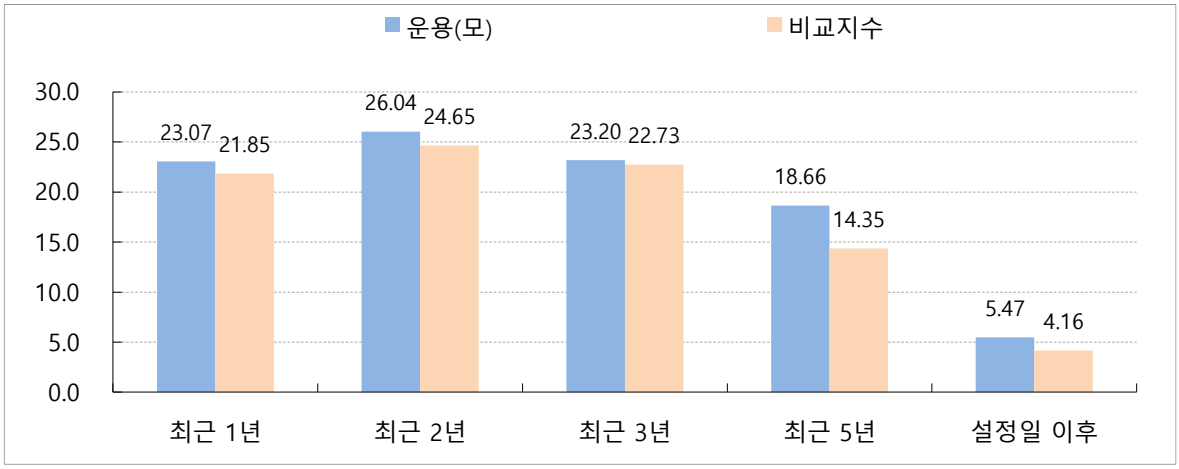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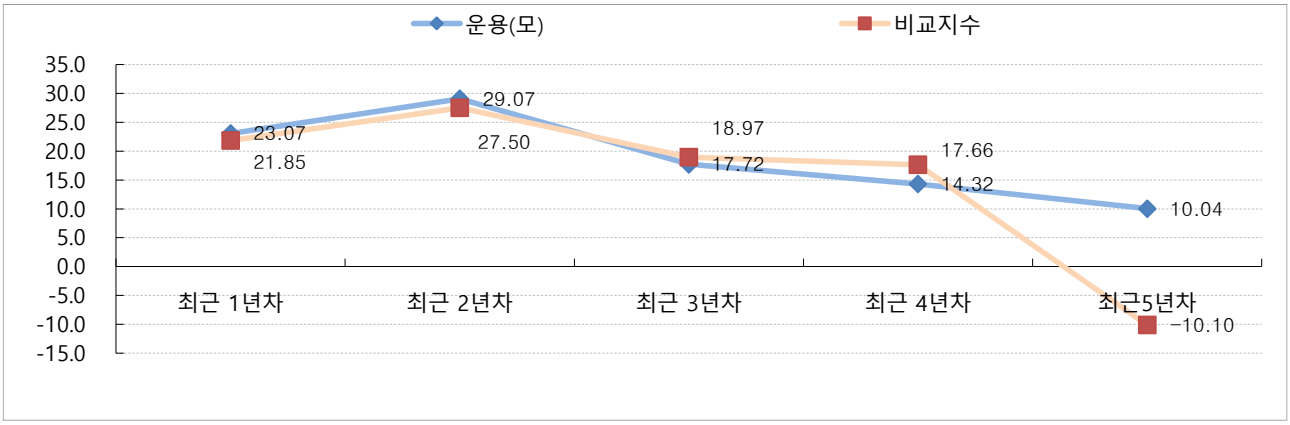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10.19~ 2026.10.18	2024.10.19~ 2026.10.18	2023.10.19~ 2026.10.18	2021.10.19~ 2026.10.18	2006.10.16~ 2026.10.18
운용(모)	2006.10.16	23.07	26.04	23.20	18.66	5.47
비교지수		21.85	24.65	22.73	14.35	4.16
수익률 변동성		19.15	17.69	16.67	17.41	18.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2011.01.10	20.45	23.36	20.59	16.13	3.82
비교지수		21.85	24.65	22.73	14.35	4.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	2025.01.21	21.34				31.15
비교지수		21.85				33.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2020.07.28	21.42	24.34	21.55	17.06	15.24
비교지수		21.85	24.65	22.73	14.35	13.5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2020.08.06	21.43	24.36	21.56	17.07	14.95
비교지수		21.85	24.65	22.73	14.35	13.32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2006.10.16	20.69	23.60	20.82	16.36	3.39
비교지수		21.85	24.65	22.73	14.35	4.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2006.10.18	20.57	23.48	20.71	16.24	3.17
비교지수		21.85	24.65	22.73	14.35	4.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주택마련 (C-H)	2007.09.17	20.47	23.37	20.61	16.14	2.02
비교지수		21.85	24.65	22.73	14.35	2.92
수수료선취-온라인 (A-e)	2014.05.23	21.33	24.25	21.46	16.98	7.46
비교지수		21.85	24.65	22.73	14.35	7.0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2014.04.23	21.33	24.26	21.47	16.98	13.03
비교지수		21.85	24.65	22.73	14.35	7.07

주1) 비교지수: [(MSCI World Energy × 30%) + (MSCI World Materials × 30%) + (FTSE Gold Mines × 30%)] + [KAP Call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6)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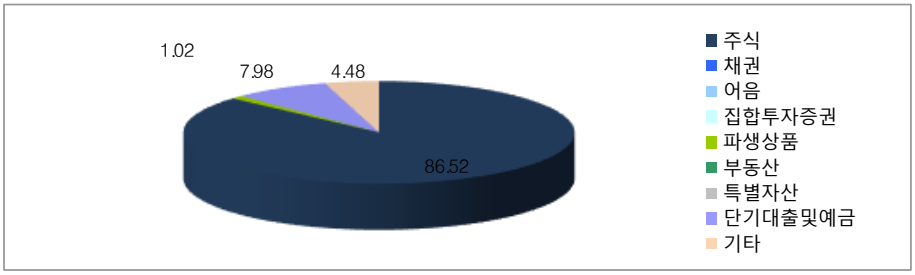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2025.10.19~ 2026.10.18	최근 2년 2024.10.19~ 2025.10.18	최근 3년 2023.10.19~ 2024.10.18	최근 5년 2022.10.19~ 2023.10.18	설정일 이후 2021.10.19~ 2022.10.18
운용(모)	2006.10.16	23.07	29.07	17.72	14.32	10.04
비교지수		21.85	27.50	18.97	17.66	-10.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2011.01.10	20.45	26.33	15.24	11.89	7.64
비교지수		21.85	27.50	18.97	17.66	-10.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2025.01.21	21.34	32.19			
비교지수		21.85	35.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2020.07.28	21.42	27.34	16.15	12.78	8.52
비교지수		21.85	27.50	18.97	17.66	-10.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2020.08.06	21.43	27.36	16.16	12.80	8.53
비교지수		21.85	27.50	18.97	17.66	-10.10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2006.10.16	20.69	26.58	15.46	12.11	7.85
비교지수		21.85	27.50	18.97	17.66	-10.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2006.10.18	20.57	26.46	15.35	12.00	7.75
비교지수		21.85	27.50	18.97	17.66	-10.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주택마련 (C-H)	2007.09.17	20.47	26.35	15.25	11.91	7.65
비교지수		21.85	27.50	18.97	17.66	-10.10

수수료선취-온라인 (A-e)	2014.05.23	21.33	27.25	16.07	12.71	8.45
비교지수		21.85	27.50	18.97	17.66	-10.1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2014.04.23	21.33	27.26	16.07	12.71	8.45
비교지수		21.85	27.50	18.97	17.66	-10.10

주1) 비교지수: [(MSCI World Energy × 30%) + (MSCI World Materials × 30%) + (FTSE Gold Mines × 30%)] + [KAP Call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6) Class C-P2e(퇴직연금) : 최근 1년차 수익률은 8.91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6.10.15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83.9	0.0	0.0	0.0	0.0	1.0	0.0	0.0	0.0	7.7	4.3	97.0
	(86.52)	(0.00)	(0.00)	(0.00)	(0.00)	(1.02)	(0.00)	(0.00)	(0.00)	(7.98)	(4.48)	(100.00)
AUD	5.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5
	(99.6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9)	(100.00)
CAD	19.1	0.0	0.0	0.0	0.0	-0.1	0.0	0.0	0.0	0.0	0.1	19.1
	(100.08)	(0.00)	(0.00)	(0.00)	(0.00)	-(0.36)	(0.00)	(0.00)	(0.00)	(0.00)	(0.28)	(100.00)
CHF	0.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7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EUR	6.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2
	(100.29)	(0.00)	(0.00)	(0.00)	(0.00)	-(0.29)	(0.00)	(0.00)	(0.00)	(0.00)	(0.00)	(100.00)
GBP	9.1	0.0	0.0	0.0	0.0	0.3	0.0	0.0	0.0	0.0	0.0	9.5
	(96.35)	(0.00)	(0.00)	(0.00)	(0.00)	(3.65)	(0.00)	(0.00)	(0.00)	(0.00)	(0.00)	(100.00)
JPY	1.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
	(98.9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6)	(100.00)
KRW	0.0	0.0	0.0	0.0	0.0	0.0	0.0	0.0	0.0	3.4	4.2	7.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4.12)	(55.88)	(100.00)
NOK	1.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USD	40.8	0.0	0.0	0.0	0.0	0.7	0.0	0.0	0.0	4.4	0.0	45.9
	(88.83)	(0.00)	(0.00)	(0.00)	(0.00)	(1.58)	(0.00)	(0.00)	(0.00)	(9.56)	(0.02)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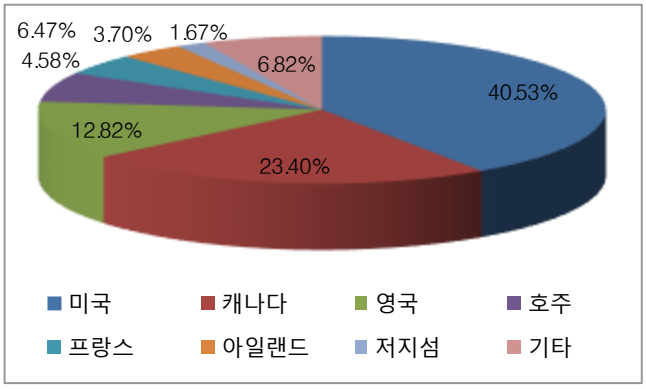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2026.10.15 현재 / 단위 : 억원,%]

거래국가	해외주식	
	금액	비중
미국	34	40.53%
캐나다	20	23.40%
영국	11	12.82%
호주	5	6.47%
프랑스	4	4.58%
아일랜드	3	3.70%
저지섬	1	1.67%
기타	6	6.82%
합계	84	9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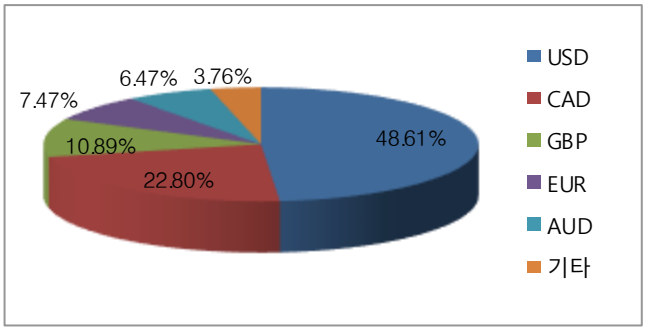


④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2026.10.15 현재 / 단위 : 억원,%]

거래통화	해외주식/채권	
	금액	비중
USD	41	48.61%
CAD	19	22.80%
GBP	9	10.89%
EUR	6	7.47%
AUD	5	6.47%
기타	3	3.76%
합계	84	100.00%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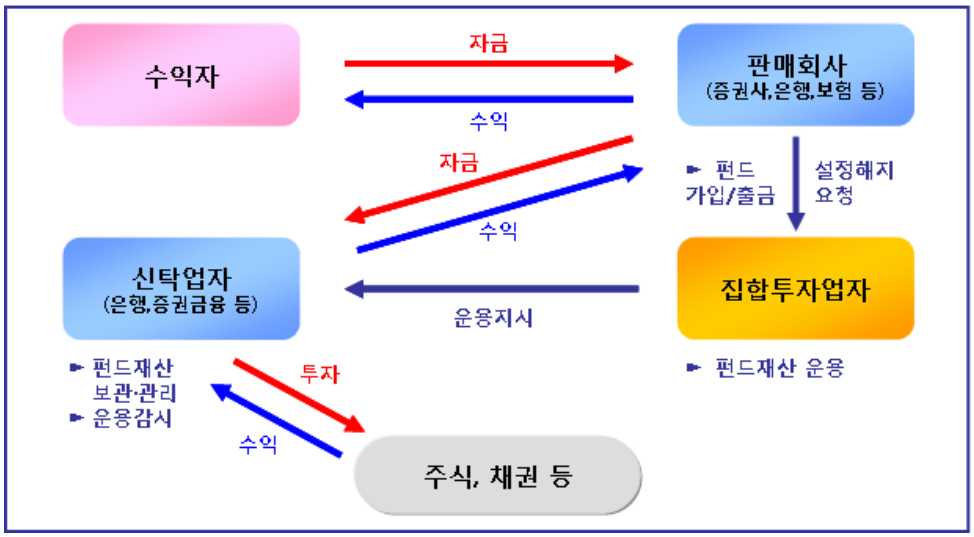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2026.10.15 현재 / 단위 : 억원,%]

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통화선도	66	100.00%
합계	66	10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회사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연락처: 02) 789-0300 / www.kiwoomam.com)
회사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 2014.12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출범 (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의 합병) 2025.12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자본금	810억원
주요주주현황	키움증권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기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나. 의무 및 책임

-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 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제38(당)기 2025.12.31현재	제37(전)기 2024.12.31현재	구분	제38(당)기 2025.01.01 ~ 2025.12.31	제37(전)기 2024.01.01 ~ 2024.12.31
현금 및 예치금	29	67	영업수익	1,251	858
증권	2,231	2,245	영업비용	751	630
파생상품자산	-	-	**영업이익**	**500**	**229**
대출채권	36	42	영업외수익	176	84
유형자산	16	22	영업외비용	79	88
사용권자산	91	118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597**	**225**
기타자산	325	365	법인세비용	135	48
자산총계	**2,728**	**2,858**	**당기순이익**	**462**	**176**
예수부채	7	3	기타포괄손익	-	-
리스부채	90	114	**총포괄손익**	**462**	**176**
기타부채	282	182			
파생상품	-	-			
부채총계	**378**	**300**			
자본금	710	710			
자본잉여금	171	171			
이익잉여금	1,469	1,678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자본총계	**2,350**	**2,559**			
부채 및 자본총계	**2,728**	**2,858**			

4) 운용자산규모

[2026.10.18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35,325	82,675	5,164	99,500	18,014	51,696	35,251	11,199	116,350	455,172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칠패로 37 (연락처: (02)2004-0000)

홈페이지	www.kr.hsbc.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연락처: (02) 3151-3500)
홈페이지	www.woorifs.co.kr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나.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한국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연락처: (02) 2251-1300 - 홈페이지: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연락처: (02) 398-3900 - 홈페이지: www.nicepni.com
KIS채권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연락처: (02) 3215-1400 - 홈페이지: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연락처: (02) 721-5300 -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이지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3층 (여의도동, CCMM빌딩) - 연락처: (02) 785-1410 - 홈페이지: www.egap.co.kr

2)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

나.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수익자 총회 등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5)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woomam.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 펀드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나.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게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주식 및 인덱스	정보제공 및 주문집행 능력,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매수수료를 배분
	채권	리서치, 거래능력, 중개사 리스크, 백오피스 업무의 신속성/정확도, 매매체결 오류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